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12. 15.
행정소방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1월 13일
충청북도지사
2. 회 부 일 자 : 2008년 11월 14일
3. 상 정 및 의 결 일 자
제276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5차 행정소방위원회(2008. 12. 8)상정,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곽임근)

1. 제안이유

-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논란으로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,
-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불편부당(不偏不黨)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□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(안 제5조제3항 신설)

- 지방공무원법 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

III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소방전문위원 운영창)
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
-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V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친절·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 (친절·공정)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<u>친절·공정</u>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5조 (친절·공정)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<u>친절</u>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공무원은 <u>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u></p>

관 계 범 령 받 취

□ 지방공무원법

제51조(친절·공정의 의무)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.